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77 발의연월일: 2022. 3. 15.

발 의 자:서일준・이명수・김용판

추경호 • 권명호 • 하영제

김승수 · 박완수 · 이종성

양금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에서 발생하여 유입되는 신종 질병으로 인해 국내 수산 생물에 대한 질병확산의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관련 사항이 수산생 물질병관리대책 수립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 고 있음.

이에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 방지대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 시 포함토록 함으로써 수 산생물질병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수산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 방지대책 수립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①	제3조(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에는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 <신 설></u>	7.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
	병의 국내유입 방지대책 수립
<u>7.</u> (생 략)	<u>8.</u> (현행 제7호와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